

# 信用狀 開設約定에 따른 開設銀行과 開設依頼人間의 責任限界에 관한 考察

朴 錫 在\*

---

目 次	
I. 序 論	IV. 信用狀 開設銀行에 대한 開設依頼人間의 責任限界
II. 信用狀 開設約定의 意義	
III. 信用狀 開設依頼人間에 대한 開設銀行의 責任限界	1. 擔保提供의 義務
1. 信用狀開設의 義務	2. 手數料와 利子支給의 義務
2. 書類審査의 義務	3. 代金補償의 義務
3. 不一致書類에 대한 交涉權	4. 其他의 義務
4. 開設銀行의 免責	V. 結 論

---

## I. 序 論

“1993年 改正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이하 “改正規則”이라 약칭함)는 1994년 1월 1일부터 發效되었으며, 이 改正規則은 “1983年 改正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이하 “舊規則”이라 약칭함)를 상당 부분 개정하였다.

먼저 改正規則의 주요 改正背景을 살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國際運送市場에서 컨테이너와 複合運送方式의 定着이라는 運送環境의 變化를 들 수 있고, 둘째는 貿易去來의 모든 分野에서 컴퓨터와 通信技術의 革新的인 發達과 導入으로 인해 EDI(電子資

---

\* 全州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料交換) 방식에 의한 貿易이 擡頭되었다는 것이다. 上記와 같은 이유 때문에 ICC(國際商業會議所)에서는 舊規則(UCP 400) 各條項의 單純化, 現實的인 銀行慣習과의 調和, 信用狀約定의 忠實性 및 信賴性的 強化, 保證信用狀 및 電子式信用狀 부문에서의 發展中인 慣行의 受容, 運送方式別 書類의 受理可能要件의 詳細한 列舉 등을 目標로 改正作業에 착수하여 現行規則의 結實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信用狀去來에서는 當事者들 간의 權利·義務關係가 중요한 問題로 擡頭된다. 信用狀去來의 中心이 되는 當事者는 開設銀行인데, 開設銀行은 賣渡人인 受益者뿐만 아니라 통상 買受人인 開設依賴人과의 關係, 그리고 通知銀行 및 買入銀行 등의 當事者들과 直接的인 權利·義務關係를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開設銀行은 開設依賴人과의 關係에서 信用狀開設의 義務, 書類審査의 義務, 그리고 不一致書類의 權利拋棄를 위한 交渉權 및 免責 등의 權利·義務關係를 갖는다. 반면에 開設依賴人도 開設銀行에 대하여 擔保提供의 義務, 手數料와 利子支給의 義務, 代金補償의 義務 등의 權利·義務關係를 갖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改正規則을 중심으로 信用狀 開設銀行과 開設依賴人間의 權利·義務關係에 관하여 특히 開設銀行의 義務에 焦點을 맞추면서 兩當事者間的 權利·義務關係에 대한 諸問題를 明確하게 밝히고 이에 따른 留意點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 II. 信用狀 開設約定의 意義

信用狀去來는 買受人이 去來銀行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依賴하고, 은행이 이것을 受諾하여 신용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事後의 事務處理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買受人을 委任者로 하고 開設銀行을 受任者로 하는 委任契約에 기초를 두고 있다.

買受人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을 의뢰받은 은행은 信用狀去來가 獨立

성과 書類去來性이라는 독특한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은행이 買受人의 신용을 떠 맡는 때(즉, 은행의 명칭을 買受人에게 貸與하는 때)로부터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개설을 買受人에 대한 與信으로서 파악하고, 擔保, 保證을 감안한 후 與信提供處로서 適格이라고 판단하면, 은행은 與信의 基本約定으로서의 “銀行去來約定書”, 附屬約定書로서의 “商業信用狀約定書” 및 “輸入擔保貨物保管에 관한 約定書” 등을 買受人으로부터 差入한다.<sup>1)</sup>

信用狀 開設約定이란 賣買契約과는 전적으로 독립된 것이며,<sup>2)</sup> 開設銀行과 開設依頼人間에 성립하는 하나의 商事契約, 즉 當事者間的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改正規則 제3조에는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을 수 있는 賣買契約 또는 기타 계약과는 別個의 去來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은행은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에 체결되는 賣買契約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신용장을 開設 또는 確認하고 支給의 義務를 履行하는데 있어서 獨立·抽象性의 原則<sup>3)</sup>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直接當事者이다. 그러나 가끔 開設依頼人의 입장에서는 舊規則 제3조의 이러한 규정을 類推解釋하여 開設依頼人은 開設銀行과의 信用狀 開設約定에 따라 受益者에 대한 은행의 支給義務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改正規則 제3조 a항의 뒷 부분에서는 信用狀에 따른 銀行의 支給義務는 開設依頼人이 開設銀行이나 受益者와의 관계에 기

1)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87, p.128.

2) P.W. Thayer, “Irrevocable Credits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ir Legal Effects”, *37 Columbia Law Review* 1326, 1937, p.1347.

3) UCP 500 제3조 a항의 “신용장은 본質적으로 그것이 基礎를 두고 있을 수 있는 賣買契約 또는 기타 契約과는 別個의 去來이다.”라는 규정은 獨立性을 설명한 것이고, UCP 500 제4조 b항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關係當事者는 書類로 去來하는 것이지, 그 書類에 關連될 수 있는 物品, 서비스 및/또는 其他 債務履行으로 去來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은 信用狀의 抽象性을 意味한다.

초하여 주장하는 請求權 또는 抗辯과는 별개의 것임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開設依賴人은 자신과 開設銀行 또는 자신과 受益者와의 관계를 원용하여 은행의 支給義務에 개입할 수 없음이 보다 명백해진 것이다. 결국 開設依賴人은 受益者가 開設依賴人과의 賣買契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書類와 相換으로 지급을 행하여야 하는 開設銀行에 대하여 그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sup>4)</sup>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단지 한 가지 문제에만 관련된다. 즉, 受益者가 제시한 서류가 그 指示書에서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련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는 書類去來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적인 계약이 목재, 석유, 기계류의 구매와 관련되는지의 여부 또는 基礎的인 계약이 다른 거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은행에게는 관련이 없다.<sup>5)</sup>

요컨대 신용장의 開設銀行과 그 開設依賴人間에 체결되는 信用狀 開設約定은 기존의 법률에 입각한다면 代理·僱傭·都給·委任 또는 事務處理契約 등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信用狀 開設約定은 이러한 典型契約들에 바탕을 두었으나 이미 그 固有의 規則을 갖고 있기 때문에 特殊한 形態의 商事契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論旨와 관련하여 Gutteridge와 Megrah는 이미 “開設銀行은 그 자신의 顧客인 신용장의 開設依賴人에 대해서는 代理人(agent)이 되며, 또한 受益者에 대해서는 本人(principal)이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6)</sup>

4)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pp.491-492.

5)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1990, p.404.

6)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London: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p.56.

### Ⅲ. 信用狀 開設依頼人에 대한 開設銀行의 責任限界

#### 1. 信用狀開設의 義務

무엇보다도 開設銀行은 特約이 없는 한 開設依頼人이 행한 指示條件에 따라서 信用狀을 개설할 의무가 있다.<sup>7)</sup> 은행으로서는 그 지시를 受理하기 어려운 때에는 指示條件을 변경시켜야 한다.<sup>8)</sup>

은행이 信用狀의 開設에 즈음해서는 開設依頼人으로부터 신용장의 受益者, 金額, 提供해야 할 船積書類의 種類와 內容, 物品의 明細, 船積期間, 有效期間 등의 이른 바 信用狀條件을 명기한 信用狀 開設依頼書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 信用狀 開設依頼書는 開設依頼人의 은행에 대한 委任契約의 申請書에 상당한다.

은행은 信用狀 開設依頼書의 내용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의 수정을 開設依頼人에게 요구한 뒤에 信用狀番號의 指定, 通知銀行의 選定, 信用狀形式의 指定, 支給銀行·補償銀行을 選定하고 자행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한다.<sup>9)</sup>

만약 開設銀行이 信用狀開設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開設依頼人은 信用狀 開設契約를 解除하고, 또한 이러한 不履行이 은행측의 故意나 過失에 기인한 때에는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信用狀 開設契約의 解除는 그 개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相當한 期間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리고 개설기간을 정한 때에는 同期間의 經過時 그 이행을 催告하지 않고 각각 이를 실행할 수 있다.<sup>10)</sup>

#### 2. 書類審査의 義務

7)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62, p.288.

8) 貿易實務講座, 貿易決済と貿易金融, 有斐閣, 1959, p.323.

9) 東京銀行, 前掲書, pp.128-129.

10) 民法 第544條, 第545條 및 第551條.

## (1) 書類審査의 基準

改正規則 제13조 a항에는 “은행은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에 따라 상당한 注意를 다하여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조건과 嚴格히 一致하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同條項을 舊規則과 비교해 보면 書類審査의 基準이 이른 바 嚴格一致의 原則으로부터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이하 “統一規則”이라 약칭함)의 諸規定을 根據로 한 國際間的 標準銀行慣習에 의한 條件充足의 原則이라는 現實的인 基準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sup>11)</sup>

여기서 은행에게 부과된 書類審査義務는 “文面上”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充足하였다고 나타나는가의 形式審査에 그치며, 그 서류의 眞正성과 표시하는 內容에 관한 實質審査를 할 義務와 責任은 없다. 이것은 서류를 심사하는 銀行員이 신용장개설의 원인이 되었던 賣買契約 등의 當事者가 아니고 또한 船貨證券 등의 眞僞를 鑑定할 수 있는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面上”이란 意味는 “賣買去來와 船貨證券 등의 證券去來의 專門家가 아닌 銀行員이 그 서류를 보아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12)</sup>

더구나 이 “文面上”(on their face)의 의미는 서류의 表面 또는 裏面이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sup>13)</sup>

여기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國際的”이므로 당연히 自國만의 銀行實務慣行이나 상대국만의 관행도 포함되지 않는 오로지 國際的인 것을 의미하며, 그 실무도 專門的 知識을 가지는 專門家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標準”的인 銀行員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銀行”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船舶會社나 保險會社가 행하는 심사는 아니라는 것이며, 또 은행의 “慣習”이 基準이며 法理論이 基準이 아니라는 意味이다.<sup>14)</sup>

11) 小原三佑嘉, “新春問答·信用狀統一規則論”, 『國際金融』 第918號, 1994, p.35.

12) 經濟法令研究會, '93年改訂版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とQ&A, 1993, p.23.

13)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 No. 511, 1993, p.39.

원래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이란 개념은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의 도입은 은행의 의무를 書類의 審査時 상당한 주의를 다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相當한 注意의 適用範圍를 결정하기 위해 導入된 것이다.<sup>15)</sup> 따라서 同概念은 實務的으로 書類와 信用狀條件이 一語一句까지 一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銀行에서 適用되는 慣習에 따라 다소 未洽한 書類도 受理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간주된다.<sup>16)</sup>

그렇다면 具體的으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의 내용에 대해서 考察해 본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과거의 統一規則上에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다. 그러나 이번 改正規則에서는 은행의 심사는 “文面上 信用狀條件을 充足하고 있다고 나타나는가”에 그치며 그 專門的, 實質的인 審査는 하지 않는 것,<sup>17)</sup> 또는 그 심사는 書類만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sup>18)</sup> 偽造書類를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도 은행은 免責된다는 것<sup>19)</sup> 등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改正規則에서는 信用狀去來는 賣買契約으로부터 獨立된 거래라는 것,<sup>20)</sup> 信用狀去來는 物品등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書類를 取扱하는 거래라는 것<sup>21)</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上記의 신용장에 대한 銀行實務가 바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이라고 언급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改正規則의 新設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새로운 基準과 義務를 은행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sup>22)</sup>

한편 貨換信用狀에 관한 銀行業은 경쟁적이며 협력적인 노력을 요

14)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64.

15) Charles del Busto, *op. cit.*, p.39.

16) 徐正斗, “貨換信用狀去來의 諸條件의 解釋에 관한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92, p.43.

17) UCP 500 第13條 a項.

18) UCP 500 第13條 b項.

19) UCP 500 第15條.

20) UCP 500 第3條.

21) UCP 500 第4條.

22)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p.64-65.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그들의 顧客과 換去來銀行의 信託을 장려하는 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객에 대하여 까다롭고, 不誠實하거나 怠慢한 慣行은 반드시 短命하게 되며, 또한 훌륭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貨換信用狀에 관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 및 慣行은 正直하고도 豫測 가능한 慣行을 포함하여야 한다.<sup>23)</sup>

또한 서류를 심사할 때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에 따르도록 改正한 理由 중의 하나는 점차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電子方式에 의한 信用狀去來에 수반될 標準慣習에 대비하여야 함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標準化된 포맷방식과 電信文의 내용들이 SWIFT(世界銀行間 金融電信網)의 범위내에 수용되어 있으며, 아울러 UN에 의해서도 統一化된 EDIFACT(行政·商易·運送에 관한 電子資料交換) 書類에 관한 “文句”(syntax)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 더 많은 것들이 달성될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서류심사에 관한 은행업무가 컴퓨터화할 때를 대비하여, 改正規則에서는 은행이 그 電子方式에 의한 信用狀去來의 국제적인 銀行標準慣習에도 따를 수 있도록 餘地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sup>25)</sup>

## (2) 書類審査의 期間

改正規則 제13조 b항에는 “開設銀行은 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受理 또는 拒絶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通告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第7銀行營業日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相當한 期間을 享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의 기간으로서 舊規則에는 “相當한 期間內에”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相當한 期間을 둘러싸고 紛爭이 頻發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ICC 國內委員會로부터 그 구체화의 요구가 제출되어 왔다. 이

23) Charles del Busto, *op. cit.*, p.39.

24) Charles del Busto, *op. cit.*, p.40.

25) 梁暎煥·吳元奭·徐正斗, 前掲書, p.514.



것을 접수한 ICC 銀行技術委員會가 법원의 판결을 조사해 본 결과 상황에 따라서 相當한 期間은, ① 만일 상당한 기간이 은행의 거절 또는 지급거절의 결정만을 위한 경우에는 서류의 受領日이 될 수도 있고, ② 어떤 판결에서는 서류의 인수 또는 거절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제3은행영업일로부터 모로코 判決과 같이 3년 이상까지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同委員會에서는 각국의 판례를 참고로 그 심사기간을 제5은행영업일 이내로 하자는 國內委員會의 의견과 제10은행영업일 이내로 하자는 國內委員會의 양 多數意見의 妥協點으로서 제7은행영업일 이내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sup>27)</sup> 改正規則 제13조 b항에 이를 규정화한 것이다.

이 제7은행영업일의 起算點은 “銀行의 書類受領日의 다음 營業日”이고 또한 이 서류의 심사기간은 開設銀行, 確認銀行(確認信用狀의 경우), 指定銀行의 각 은행에게 공히 주어진다.

한편 이러한 심사기간은 어디까지나 “相當한 期間內에”라는 제약이 붙여진 기간이고, 인수를 결정하고 결제하는 것을 審査期間의 最終日까지 연장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sup>28)</sup>

上記의 “相當한 期間”이란 서류의 提示, 種類, 金額 등의 事情에 따라 위 7일의 기한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開設銀行이 수백통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면, 동 은행은 7일 동안의 全期間에 걸쳐 相當한 期間을 尙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保證信用狀에 관한 元金 또는 利子の 負債에 대한 단순한 진술은 단지 審査期間의 1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sup>29)</sup>

또한 상기 규정에서 서류심사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書類受領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改正規則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26)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p.24.

27) Charles del Busto, *op. cit.*, p.40.

28)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p.23-24.

29)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p.25.

따라서 이 경우의 書類受領日은 그 書類到着地の 慣習 및 取扱銀行의 内部規程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서류가 직접 은행에 店頭提示되는 경우의 書類受領日은 은행의 영업시간내에 店頭에 提示되면 그 當日이 書類受領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류가 郵便 등으로 送付되어 온 경우의 書類受領日을 살펴보면, 신용장 거래는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國際郵便으로 서류가 송부된다. 우편에 의한 접수의 경우는 몇 시까지 또는 은행의 영업시간내라고 엄밀하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고, 서류를 수령한 은행의 당해 業務擔當課에서 受理를 確認한 날을 書類受領日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sup>30)</sup>

한편 상기의 相當한 期間은 各當事者에게 非累積的이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確認銀行에게 있어서 7일의 기간은 開設銀行에 의한 書類受領日에 뒤 이어서 7일간의 銀行營業日을 초과하지 않는 相當한 期間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1)</sup>

### (3) 非指定書類의 審査除外

改正規則 제13조 a항에는 “신용장에 規定되지 아니한 書類는 은행이 이를 審査하지 아니한다. 만약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은행은 이를 提示人에게 返送하거나 또는 이를 아무런 책임없이 그대로 送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同條 c항의 “信用狀條件을 충족하여 제시되어야 할 書類”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對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信用狀去來는 書類去來이기 때문에, 신용장상에는 “信用狀條件을 충족하여 제시되어야 할 書類”가 정해져야 하지만, 그 조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書類가 作成不可能한 경우의 신용장조건에 관한 규정이 c항이고, 역으로 書類는 있지만 그 書類가 신용장의 요구서류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처리규정이 a항이다.<sup>32)</sup>

30)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p.65-66.

31) ICC Document No. 470-37/104, September 18, 1992, lines 656~666.

32)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3.

동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며, 書類審査의 까다롭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vexing and growing problem)에 관한 명시를 意圖하였다. 즉, 신용장에 規定되지 않은 書類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특히 이러한 規定되지 않은 書類들이 規定된 書類와 不一致한 事項을 포함할 때, 신설된 규정은 명시적으로 은행이 規定되지 않은 書類들을 심사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서류의 處理方法을 설명하고 있다. 은행이 “信用狀에 規定되지 않은 書類”를 審査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提示者에게 返送하거나 또는 아무런 책임없이 그대로 송부할 수도 있다.<sup>33)</sup>

#### (4) 書類없는 信用狀條件의 無效

改正規則 제13조 c항에는 “신용장에 있어서 書類의 지정이 없이 條件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信用狀條件은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規則 제22조 a항에서는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지시에는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의 대상이 되는 서류가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어야 할 書類가 없는,<sup>34)</sup> 또는 명기하고 있지 않은 信用狀條件”이 있는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지시가 전과 다름없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지시는 書類去來의 원칙 중에 성립되는 은행의 信用狀實務를 현저히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改正規則 제13조 c항은 상기와 같은 條件은 무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시되어야 할 書類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條件”이란, ① 受益者가 入手不可能한 書類를 要求하는 조건, ② 開設者가 알 수 없는 明細를 포함하는 書類를 要求하는 조건, ③ 서류의 文面上으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 ④ 기타의 서류

33) Charles del Busto, *op. cit.*, p.40.

34) 예를 들면 “만일 適切한 物品이 船積된다면, 우리는 支給할 것이다.”라는 條件을 들 수 있다.

로부터 判斷可能한 有效期間, 船積期間, 書類의 提示期間 이외의 時間의 條件<sup>35)</sup>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혼한 예로서 支給, 引受, 買入依頼時 受益者가 입수하여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輸入地에서의 檢査證明書 등을 들 수 있다.<sup>36)</sup> 또한 買入銀行 등에 대한 開設銀行의 書類送達指示, 補償指示 또는 買入銀行으로부터 開設銀行에로의 買入하겠다는 뜻의 電信通知인 네고 電信에 관한 指示 등 特別指示는 買入銀行 등과 開設銀行間의 換去來關係에 기초를 둔 지시이고, 前記의 조건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된다.<sup>37)</sup>

서류의 言及이 없는 信用狀條件은 改正規則 제13조 c항의 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제4조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모든 關係當事者는 書類로써 거래한다.”라는 信用狀의 抽象性을 강조한 黃金律에 違背된다. 그렇지만 改正規則의 以前에는 은행은 일정한 품질의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었는지 또는 선박이 기일내에 실제로 출항했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黃金律을 벗어나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銀行慣習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sup>38)</sup>

“書類없는” 條件에 대한 문제점의 解決方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은행으로 하여금 書類의 언급이 없는 信用狀條件에 충분히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書類를 수리할 수 있도록 裁量權을 附與하는 것이다. 둘째, 書類의 언급이 없는 條件은 모두 無視하고 그 제시된 書類를 심사하지 않도록 排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ICC 銀行委員會에서는 만장일치로 위의 두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그 이유는 두번째의 방법이 개념상으로 단순화가 가능하며 업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의 추세, 특히 유럽대륙에서는 混亂스러운 신용장조건의 개설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35)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ICC Pub. No. 416.

36)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4.

37) 桐谷芳和,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 經濟法令研究會, 1993, p.33.

38) 梁映煥·吳元奭·徐正斗, 前掲書, p.515.

러한 문제점 때문에 改正規則에서는 신용장의 開設銀行이나 開設依頼人是 반드시 일정한 서류를 언급한 후 그 “條件”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sup>39)</sup>

### 3. 不一致書類에 대한 交渉權

改正規則 제14조 c항에는 “開設銀行이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제 조건과 불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그 獨自의인 判斷으로 開設依頼인과 그 瑕疵에 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交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舊規則과 비교해 보면, 舊規則은 不一致에 대한 權利拋棄를 위해 開設銀行이 開設依頼인과 교섭하는 관행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舊規則 제16조는 開設銀行이 서류의 提示者에게 支給拒絶을 통지하기 이전에 權利拋棄를 위해서 開設依頼인과 교섭하는 것을 금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sup>40)</sup>

이는 세계 각국에서 관행이 되고 있는 開設銀行에 의한 開設依頼인에게로의 書類不一致에 대한 照會를 規定化하고, 明確하게 그 位置를 附與한 것이다.<sup>41)</sup> 즉, 開設銀行이 서류의 不一致를 발견한 경우, 즉시 거절하지 않고 開設依頼인에 대해서 그 불일치의 허용 여부를 照會하는 관행은 일반적인 銀行慣行이다.

本條項은 受益者에 대한 은행의 의무와 不一致에 대한 權利拋棄를 위해서 開設依頼인에게 교섭하는 開設銀行의 일반적인 은행관행을 어떻게 調和시키는가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調和는 開設銀行에 의한 開設依頼인에게의 接近은 開設銀行이 獨立의이며 委託된 支給擔當者로서 行動할 때에만 正當化되며, 만약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開設依頼인의 일개 導管(conduit)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正當化되지 않

39)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p.26.

40) Michael Evan Avidon, “Letters of Credit-New UCP 500 to Take Effect January 1, 1994”, *The Banking Law Journal*, Vol. III, No. 1, 1994. 1~2, p.84.

41) 桐谷芳和, 前掲書, p.33.

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開設依賴人과의 접촉이 만일 開設銀行과 開設依賴人이 不一致書類에 관한 連帶決定을 하기 위해 意圖된다면 正當化되지 못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sup>42)</sup> 統一規則의 改正作業部에서는 權利拋棄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開設銀行의 開設依賴인에 대한 接近을 制限함으로써 그러한 접근의 제한이 신용장 약정의 誠實性 및 獨立성과 일치한다고 믿었다.<sup>43)</sup>

즉, 본 규정에서는 開設依賴인이 허용 또는 거절의 회답을 한 경우에도 開設銀行의 獨自的인 判斷으로 開設依賴人の 회답과는 반대의 결정, 즉 거절 또는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開設銀行이 결정하는 문제이지, 開設依賴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용장의 主債務者가 開設銀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運用上 자칫하면 顧客의 意思를 존중하는 나머지, 이 원칙과 반대의 적용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sup>44)</sup>

한편 開設銀行은 不一致한 서류의 補完이나 이에 대한 開設依賴人の 權利拋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서류를 受理拒絶하고 送付한 當事者の 處分權에 一任하여 이를 保有할 수 있다.<sup>45)</sup> 그리고 開設銀行은 開設依賴人과 不一致한 서류의 權利拋棄를 교섭할 때에도 반드시 서류의 受領翌日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범위내에서 相當한 期間을 택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4. 開設銀行의 免責

##### (1) 書類效力에 대한 免責

改正規則 제15조에는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모든 은행은 各種 書類의 效力에 대하여 아무런 義務 또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42) Charles del Busto, *op. cit.*, p.46.

43)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p.29.

44)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5.

45)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p.29.

하고 있다. 즉, 은행은 ① 書類의 形式·充分性·正確性·眞正性·偽造 또는 法的 效力, 그리고 書類上의 一般條件 및/또는 特別條件, ② 物品의 明細·數量·品質·狀態·包裝·引渡·價值 또는 存在與否, ③ 物品의 託送人·運送人·運送周旋人·受貨人·保險者 또는 其他 當事者의 誠實性, 作爲 및/또는 不作爲, 支給能力, 債務履行 또는 財政狀態 등에 대하여 免責된다는 것이다.

이를 舊規則과 비교해 보면, 동 규정은 舊規則의 제17조와 거의 같은 규정으로서 은행은 서류의 眞正性 등에 관해 아무런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物品의 價值 또는 存在 등에 관해서도, 또는 물품의 운송인 등 關係者의 履行能力과 業態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요컨대 은행은 偽造書類가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偽造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實質的으로 審査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改正規則에서는 본조 마지막 문단의 運送人 등 關係者 속에 運送周旋人과 受貨人을 추가하고 있다.<sup>46)</sup>

## (2) 書信送達에 대한 免責

改正規則 제16조에는 “은행은 각종 通信, 書信 또는 書類의 送達中 遲延 및/또는 紛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또는 모든 書類의 送達中 발생하는 遲延, 毀損 또는 기타 誤謬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專門用語의 翻譯 및/또는 解釋上의 誤謬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신용장상의 用語들을 翻譯함이 없이 送達할 權利를 留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舊規則과 비교해 보면, 改正規則 제16조는 舊規則 제18조의 “errors in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terms”라는 문언을 “errors in translation and/o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terms”라고 하여 “and”를 추가하였을 뿐 별다른 개정은 없다. “and”라는 단어

46)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6.

를 추가한 것은 번역과 해석 양자가 은행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결합될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그 자신 또는 결합된 형태로도 역할을 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sup>47)</sup>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하면, 은행은 專門用語에 제한받지 않고, 예를 들면 프랑스어로 수신한 것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프랑스어 그대로 受益者 등에게 전달하면 좋다는 것이고, 본조에서 免責되기 때문에 구태여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sup>48)</sup>

### (3) 不可抗力에 대한 免責

改正規則 제17조에는 “은행은 天災, 暴動, 騷擾, 反亂, 戰爭 또는 기타 은행이 統制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모든 同盟罷業 또는 工場閉鎖에 의하여 銀行業務가 中斷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授權되지 않은 한,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業務中斷 동안에 滿期된 信用狀에 따라 支給, 延支給約定, 환어음의 引受 또는 買入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舊規則과 비교해 보면, 改正規則 제17조는 舊規則 제19조와 거의 같은 규정이다. 다만 舊規則 제19조의 “...or effect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under credits...”라는 표현이 改正規則에서는 表現上의 一致를 위해 “...pay, accept Draft(s) or negotiate under Credits...”라고 수정되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국제계약은 不可抗力의 사건에 관한 責任을 免除시키는 것이 일반관행이기 때문이다.<sup>49)</sup>

본조에서는 指定銀行은 업무중단의 결과로 기한이 지난 신용장에 기초한 매입 등을 행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開設銀行의 義務와 責任에 관해서는 不明確한 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9조 a항 iii호 및 iv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指定銀行에 의한 매입 등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開設銀行의 支給義務는 면책되는 것이

47) Charles del Busto, *op. cit.*, p.50.

48)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6.

49) Charles del Busto, *op. cit.*, p.51.



아니기 때문에 受益者는 開設銀行 앞으로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有效期限 경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期限前提示의 證明書(Certificate of Presentation before Expiry Date)을 受益者가 작성해서 指定銀行의 交替署名(counter sign)을 받던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去來銀行의 交替署名을 받아서 송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有效期間은 매입 등의 기간과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42조 a항에 있는 바대로 受益者에 의한 서류의 提示期間이기 때문에 서류의 제시가 有效期間內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開設銀行의 입장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sup>50)</sup>

#### (4) 被指示者行爲에 대한 免責

改正規則 제18조에는 “은행이 開設依頼人の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單一 또는 多數의 他銀行의 서비스를 利用할 때에는 당해 開設依頼人の 費用과 危險負擔으로 이를 행한다. 은행은 그러한 他銀行의 선정에 있어서 스스로 主導權을 갖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용장의 개설에 관련하여 外國의 法律과 慣行에 의한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窮極의으로 이는 開設依頼人の 부담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IV. 信用狀 開設銀行에 대한 開設依頼人の 責任限界

### 1. 擔保提供의 義務

開設銀行은 신용장하에서 발행된 환어음의 支給前에 開設依頼人에

50)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6.

게 資金이나 擔保의 預置를 요구할 수 있다.<sup>51)</sup> 은행은 信用狀態가 좋은 優良去來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에 따라 與信處로부터 不動産, 保證金의 提供, 社債, 公債, 有價證券, 株式 등의 物的 擔保外에<sup>52)</sup> 保證이라는 人的 擔保를 差入한 후 有擔保與信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 繼續的인 與信去來處의 差入擔保는 根擔保로 처리된다.<sup>53)</sup> 따라서 信用狀 開設依頼人은 開設銀行에게 約定된 대로 신용장개설에 대한 擔保利益(security interests)을 제공하여야 신용장을 개설받을 수 있다. 예컨대 開設依頼人은 ① 일정한 現金 또는 擔保物을 預置하거나 閉鎖計定(blocked account)에서 移替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② 物품에 대한 權利證券 등을 포함한 動産質(pledge) 또는 抵當證書(letter of hypothecation)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擔保利益을 제공할 수 있다.<sup>54)</sup>

信用狀의 開設銀行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 開設依頼人에 대하여 신용장금액과 銀行手數料·利子·換率變動費用 등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流通證券과 같은 擔保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은행은 이를 信用狀殘高의 回收를 위하여 擔保에 대한 留置權과 相計請求權을 갖게 된다.<sup>55)</sup>

우리 나라의 銀行慣習과 民法에서는 信用狀의 開設依頼人이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開設銀行은 擔保인 物品의 權利證券을 賣却하여 開設依頼人의 債務인 元利金에 充당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sup>56)</sup>

## 2. 手數料와 利子支給의 義務

信用狀의 開設依頼人은 開設銀行에게 그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

51) A.G. 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London: Sweet & Maxwell, 1987, p.1410.

52)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pp.172-173.

53) 東京銀行, 前掲書, p.305.

54)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p.121.

55) 梁暎煥·吳元奭·徐正斗, 前掲書, p.384.

56) 韓國外換銀行, 信用狀開設에 대한 「擔保差入證」樣式; 民法 第322條.

설한 用役과 信用을 供與한 代價에 相當하는 銀行手數料과 利子を 支給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sup>57)</sup> 開設銀行은 開設依頼人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手數料나 報酬를 받을 자격이 있다. 英國의 대부분 銀行들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한번 代金を 請求하고, 신용장을 現金化할 때 다시 한번 代金を 請求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첫번째 금액은 信用狀의 開設과 관련이 있고, 십중 팔구 만일 신용장이 現金化되지 않더라도 돌려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sup>58)</sup> 信用狀 統一規則 제18조 c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擴大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指示한 當事者는 그 지시와 관련하여 指示받은 當事者가 지급한 手數料, 料金, 費用 또는 支出金を 포함한 모든 經費를 負擔하는 義務를 진다. 또한 信用장에서 그러한 經費는 지시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經費를 徵收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指示當事者가 最終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의 義務를 진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당연한 규정으로 생각되지만, 그 규정의 배경에는 적지 않게 論爭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더구나 舊規則에서는 “指示銀行”, “被指示銀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改正規則에서는 “指示人”, “被指示人”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指示人和 被指示人이 銀行뿐만 아니라 開設依頼人和 買入依頼人 등의 顧客을 포함하는 모든 指示人·被指示人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임을 나타내 보이고, 그 責任關係를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이다.<sup>59)</sup>

한편 指示當事者 이외의 당사자에 의한 經費의 責任問題를 明確히 하여야 한다는 國內委員會들의 요구에 응하여, ICC는 비록 指示當事者의 責任은 2次的이지만<sup>60)</sup> 指示當事者가 그러한 경비에 대해 最終的

57) UCP 第18條 a項.

58) A.G. Guest, *op. cit.*, p.1410.

59) Charles del Busto, *op. cit.*, p.53.

60) 本規定의 맥락에서 2次的 責任이란 만일 支給銀行이 受益者의 어음 發行額이 그러한 控除를 가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受益者에게 支給으로부터 그 經費를 控除할 수 없다면, 指示當事者가 그 經費를 支給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sup>61)</sup>

예를 들면 信用狀 開設依頼書에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의 指示人은 信用狀 開設依頼人이고, 被指示人은 開設銀行이 된다. 이 경우에 만약 은행비용이 受益者로부터 徵收不可能한 때에는 指示人인 開設依頼人이 最終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通知銀行의 通知手數料, 取消手數料 등에 관해서도 指示人인 開設依頼人의 부담이 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sup>62)</sup>

### 3. 代金補償의 義務

信用狀의 開設依頼人은 開設銀行이 引渡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文面上 一致하면 書類의 引受를 거절할 수 없으며,<sup>63)</sup> 信用狀의 開設銀行이 신용장조건과 文面上 일치한 서류와 相換으로 지급 또는 신용장에 기초하여 引受한 어음의 지급을 행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은행에 대해 그 支給代金の 補償支給을 행하여야 한다.<sup>64)</sup> 즉, 信用狀 開設銀行이 信用狀事務를 處理함에 있어 買入銀行 등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開設銀行은 委任者인 開設依頼人에 대해 위임의 비용으로서 자기가 出捐한 것에 대한 補償請求權(reimbursement claim)을 취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受任者인 은행이 미리 이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일도 가능하다. 開設依頼人의 입장에서 보면, 開設銀行의 補償請求權은 은행에 대한 開設依頼人의 補償債務라는 것이다. 開設依頼人의 補償債務는 擔保와 함께 信用狀去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銀行과 開設依頼人間의 商業信用狀約定書에 상세하게 규정된다.<sup>65)</sup>

61) Charles del Busto, *op. cit.*, p.53.

62)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7.

63) F.M.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p.14.

64) 貿易實務講座, 前掲書, p.325.

65) 東京銀行, 前掲書, pp.141-142.

따라서 開設依頼인이 代金の 補償을 거절한 경우에는, 開設銀行은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에 預置된 現金 또는 擔保物을 處分할 수 있다. 특히 開設銀行이 지시받은 대로 지급 또는 인수를 완료한 후 開設依頼인이 支給不能되거나 일방적으로 信用狀取消을 지시한 경우에는, 開設銀行은 代金を 補償받기 위하여 자신의 占有下에 있는 물품이나 서류의 처분에 있어서 그 開設依頼인의 一般債權者보다 優先辨濟權을 갖게 된다.<sup>66)</sup>

#### 4. 其他의 義務

上記와 같은 義務 以外에도 信用狀의 開設依頼인은 信用狀 開設約定에 따라 명시된 기타의 모든 義務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컨대 開設依頼인은 開設銀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完全한 開設指示의 義務

改正規則 제5조에는 “신용장을 開設하기 위한 指示 및 신용장 그 자체는 完全하고 正確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기 위해서는 混亂과 誤解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信用狀 속에 過度한 明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② 承諾畢, 未承諾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건변경이 되고 있는 기발행의 신용장을 참조한 類似信用狀의 開設, 通知 또는 確認의 指示方法을 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67)</sup>

따라서 開設依頼인의 지시가 명확한 경우에는 開設銀行은 오직 自身の 危險負擔으로만 信用狀의 開設指示로부터 離脫할 수 있다.<sup>68)</sup>

##### (2) 他銀行 서비스 利用의 費用支給의 義務

開設依頼인은 자신의 지시를 履行할 목적으로 開設銀行이 他銀行의 서비스를 利用한 경우에 그러한 費用과 危險, 그리고 外國의 法律과

66) Kozolchyk, *op. cit.*, pp.146-154.

67)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p.13-14.

68)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London: Sir Isaac Pitman & Sons Ltd., 1965, p.59.

慣習에 따라 賦課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補償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sup>69)</sup> 여기서 外國의 法律과 慣習에 따라 賦課되는 것은 公共租稅 및 賦課金, 取扱手數料 또는 輸出規制 등에 의한 信用狀의 使用不能에 수반하는 手數料 등을 들 수 있다.<sup>70)</sup> 한편 본 조항은 그것이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銀行所在國家의 法律 및 慣習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71)</sup>

## V. 結論

本研究는 信用狀 開設約定에 따른 開設銀行과 開設依頼人間의 責任 限界를 考察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특히 信用狀去來의 國際的인 商 慣習을 반영하는 改正規則이 今年 1월 1일부터 發效되어 施行되고 있으므로, 信用狀去來의 상기 兩當事者들은 改正規則에 기초한 그들의 義務를 명확히 인식할 必要性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本論에서 論議된 兩當事者들의 義務를 요약하고 당사자들이 留意할 點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信用狀 開設銀行은 特約이 없는 한, 開設依頼人이 행한 지시조건과 일치하도록 信用狀을 開設할 義務가 있다. 이 때 銀行으로서 유의할 點은 開設依頼人에 의한 지시가 受諾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지시내용을 變更시키는 것이 좋다는 點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용장을 둘러싼 紛爭의 餘地를 事前에 豫防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開設銀行은 改正規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에 따라 審査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國際的인 銀行標準慣習은 改正規則上의 新設된 概念이지만 內容上으로는 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統一規則上에 반영되어 施行

69) UCP 500 第18條 a項 및 d項.

70) 經濟法令研究會, 前掲書, p.27.

71) Charles del Busto, *op. cit.*, p.53.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書類審査期間은 書類受領日에 이은 第7銀行營業日을 초과하지 않는 相當한 期間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開設銀行은 가능한 한 이 기간내에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서류심사가 不可能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事前에 信用狀上에 이보다 더 長期間의 書類審査期間을 明記하여야 한다. 그리고 改正規則에 따르면 종전까지 곤란한 문제였던 신용장상에 規定되지 않은 書類 및 “書類없는”(non documentary) 條件의 處理問題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은행이 不一致書類에 대해 開設依頼人에게 交渉할 경우, 동 은행의 행위는 자신이 獨立의이며 委任된 支給擔當者로서 행동할 때에만 正當化되며, 만약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開設依頼人의 일개 導管(conduit)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開設依頼人은 開設銀行에게 신용장 개설에 대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信用狀을 개설한 用役과 信用을 供與한 代價로 銀行手數料 및 利子を 支給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상에 지시와 관련한 경비가 指示當事者 이외의 當事者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經費가 徵收不可能한 경우에는 最終적으로 開設依頼人이 責任을 져야 한다는 점에 留意하여야 한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文面上 일치한 서류와 相換으로 代金を 支給한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해 補償支給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開設依頼人이 代金の 補償을 거절하면 開設銀行이 물품이나 서류의 處分에 있어서 開設依頼人의 一般債權者보다 優先辨濟權을 갖는다는 점에 留意하여야 한다.

## 参考文献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徐正斗, “貨換信用狀去來의 諸條件의 解釋에 관한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 1992.
- 桐谷芳和,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 經濟法令研究會, 1993.
- 小原三佑嘉, “新春問答・信用狀統一規則論”, 『國際金融』 第918號, 1994.
-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62.
- 經濟法令研究會, '93年改訂版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とQ&A, 1993.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87.
- 貿易實務講座, 貿易決済と貿易金融, 有斐閣, 1959.
- Avidon, M.E., “Letters of Credit - New UCP 500 to Take Effect January 1, 1994”, *The Banking Law Journal*, Vol. III, No. 1, 1994. 1~2.
-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 No. 511, 1993.
- Davis, A.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London: Sir Isaac Pitman & Sons Ltd., 1965.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 Guest, A.G., *Benjamin's Sale of Goods*, 3rd ed., London: Sweet & Maxwell, 1987.
-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London: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 Kozolchyk, B.,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1990.

Thayer, P.W., "Irrevocable Credits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ir Legal Effects", *37 Columbia Law Review* 1326, 1937.

Ventri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ICC Document No. 470-37/104, September 18, 1992.

ICC, *UCP 500*.

ICC, *UCP 400*.